

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05. 3.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종합토지세를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하고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을 재산세에 포함 과세하는 등 재산세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종합토지세 규정은 삭제함.

○ 재산세 납기

- 주 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까지
- 토 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

나. 자동차세중 시시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시시에서 1600시시로 조정함.

다.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납기를 매년 9.16 ~ 9.30로 변경하고, 과표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세율을 현행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함.

라.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함.

마. 기타 법령개정에 의한 조문상의 용어 등을 보완 정비함.

3. 참고사항

- 지방세법 제5조 · 제111조, 동법 제2절 재산세(제180조 · 제181조 · 제183조, 제187조 내지 제191조) · 제196조의 5 · 제196조의 17 · 제237조, 동법시행령 제173조의 2
- 법률 제7332호 지방세법 부칙 제1조 · 제5조
- 경상북도 재정과-897(2005. 1.27) 시세조례 정비안(행정자치부)

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업소득세할 :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제23조중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를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로 한다.

제24조 내지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중중재산으로서 중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5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6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7조(세율) ①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u><과세표준></u>	<u><세율></u>
5,000만원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u><과세표준></u>	<u><세율></u>
2억원이하	1,000분의 2
2억원초과 10억원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4,000만원이하

4,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1억원초과

<세율>

1,000분의 1.5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4. 선박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27조의2를 제27조의3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2(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27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8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호 내지 제6호**를 제5호 내지 제8호로 하여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제29조제1항 중 “법 제184조”를 “법 제186조”로 한다.

제30조의 제목·제1항 각호중 “건축물”을 각각 “부동산”으로 하고, **제2항**중 “건축물”을 “부동산”으로, “100분의 75로”를 “100분의 50으로”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

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 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 주택으로 되었을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 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7조제1항제1호의 표중 “씨씨”를 각각 “시시”로 하고, “1500”을 각각 “1600”으로 하며, 동항**제5호**의 표중 “버스”를 각각 “자동차”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주행세의 세율은 법 제196조의17 제1항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제5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법 제22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제2장제7절(제71조 내지 제82조)을 삭제한다.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5조제4호및제5호를 제5호및제6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제86조제1항·제87조제1항 및 제2항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고, 제86조제2항중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을 “재산세과세대장”으로 한다.

제89조 및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 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 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91조중 “1,000분의 2”를 “1,000분의 1.5”로 한다.

제92조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제93조제1항 및 동항 제1·2·5·6호중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고, 동항 제3호중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를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로 하고, 동항 제4호중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를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 건축물 및 비과세 주택으로”로 하며, 동조 제3항 및 제4항의 “법 제192조”와 “법 제234조의 21”을 각각 “법 제194조”로 하며 동조 제4항중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94조중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종합토지세과세대장 등”을 “재산세 과세대장”으로 한다.

제4조 본문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제5조중 “구미시세부과징수규칙”을 “「구미시세 부과징수 규칙」”으로 하며, 제7조제2항중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12조제1항중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21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제1호·제2호·제4호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며, 제37조제2항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 관리법」”으로 하고, 제40조의2 본문중 “교통세법”을 “「교통세법」”으로 하고, 제40조의4 제1호 및 제2호중 “교통세법”을 “「교통세법」”으로,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하며, 제41조제3항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하고, 조례 제403호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항본문, 동항제1호중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4절의 규정(제41조 내지 제51조)은 이 조례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세목) 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①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7. (생략) 8. <u>종합토지세</u> ② (생략)	제3조(세목) ----- ----- ①-----, 1. ~ 7. (현행과 같음) 8.<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세율) ①(생략) ②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u>농지세할 : 농지세액의 100분의 10</u>	제20조(세율) ①(현행과 같음) ② -----, 1. ~ 2. (현행과 같음) 3. <u>농업소득세할: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u>
제23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u>건축물·선박 및 항공기</u>(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시내에 기항지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	제23조(과세대상 등) ----- -----<u>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u>----- ----- -----,
제24조(납세 의무자) ①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 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	제24조(납세 의무자) ①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 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

현행	개정안
를 진다. ④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⑥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종재산으로서 종종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현행	개정안
<u>제25조(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u> <u>제26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u> <u>제27조(세율)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u> 1. 건축물 (1) 주택 <u><과세표준> <세율></u> 1,200만원 이하 1,000분의 3	<u>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u>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u>제25조(과세표준) ④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②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u>제26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u> <u>제27조(세율) ①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u>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u><과세표준> <세율></u>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현행	개정안
1,200만원 초과 3만6천원+1,200만원 1,600만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600만원 초과 5만6천원+1,600만원 2,200만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2,200만원 초과 11만6천원+2,200만원 3,000만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3,000만원 초과 36만6천원+3,000만원 4,000만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4,000만원 초과 85만6천원+4,000만원	5,000만원 초과 10만원+5,000만원 1억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2)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50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6 (4) 제1목 내지 제3목 이외의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3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40만원+2억원 10억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2. 선박 (1) 고급선박 그 가액의 1,000분의 50 (2) 제1목이외의 선박 그 가액의 1,000분의 3 3. 항공기 그 가액의 1,000분의 3 ②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현행	개정안												
②(생략)	<u>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u> 3. 주택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u>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u> 나. 가목 이외의 주택 <table border="1"> <thead> <tr> <th><u><과세표준></u></th><th><u><세율></u></th></tr> </thead> <tbody> <tr> <td><u>4,000만원 이하</u></td><td><u>1,000분의 1.5</u></td></tr> <tr> <td><u>4,000만원 초과</u></td><td><u>6만원+4,000만원</u></td></tr> <tr> <td><u>1억원 이하</u></td><td><u>초과금액의 1,000분의 3</u></td></tr> <tr> <td><u>1억원 초과</u></td><td><u>24만원+1억원</u></td></tr> <tr> <td></td><td><u>초과금액의 1,000분의 5</u></td></tr> </tbody> </table> 4. 선박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u>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u>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u>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u> 5. 항공기 <u>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u> ②(현행과 같음)	<u><과세표준></u>	<u><세율></u>	<u>4,000만원 이하</u>	<u>1,000분의 1.5</u>	<u>4,000만원 초과</u>	<u>6만원+4,000만원</u>	<u>1억원 이하</u>	<u>초과금액의 1,000분의 3</u>	<u>1억원 초과</u>	<u>24만원+1억원</u>		<u>초과금액의 1,000분의 5</u>
<u><과세표준></u>	<u><세율></u>												
<u>4,000만원 이하</u>	<u>1,000분의 1.5</u>												
<u>4,000만원 초과</u>	<u>6만원+4,000만원</u>												
<u>1억원 이하</u>	<u>초과금액의 1,000분의 3</u>												
<u>1억원 초과</u>	<u>24만원+1억원</u>												
	<u>초과금액의 1,000분의 5</u>												
<u><신설></u>	<u>제27조의2(서울적용)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을 적용한다.</u> 1. <u>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가목의 서울을 적용한다.</u> 2. <u>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u>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과세 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u>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u> 3. <u>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u> <u>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u> <u>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u> <u>④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u> 제27조의3(과세 기준일 및 납기) 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u>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u> 1. <u>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u> 2. <u>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u> 3. <u>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u> 4. <u>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u>

현행	개정안
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구미시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u><신설></u>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u><신설></u>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선박의 선질, 명칭, 정제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6.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 ----- ----- ----- ----- ----- ----- 1. (현행과 같음) 2. <u>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u> 3. ----- ----- 4. <u>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u> 5. ----- ----- 6. ----- ----- 7. ----- ----- 8. ----- -----

현행	개정안
제29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9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법 제186조 ----- ----- ----- -----,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구관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30조(구관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①----- -----, 1. -----부동산 2. ----- 부동산 3. ----- 부동산 4. ----- 부동산 ②-----부동산 -----100분의 50으로-----.
제32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 건축물이 과세 건축물로 되었을 때	제32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때

현행	개정안																																																																										
4. <u>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u> 5. <u>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u> 6. <u>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u> <신설>	4. <u>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u> 5. <u>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u> 6. <u>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u> 7. <u>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u>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승용자동차 <table><tr><th colspan="2">영업용</th><th colspan="2">비영업용</th></tr><tr><th>배기량</th><th>ㄷㄷ당세액</th><th>배기량</th><th>ㄷㄷ당세액</th></tr><tr><td>1,000ㄷㄷ이하</td><td>18원</td><td>800ㄷㄷ이하</td><td>80원</td></tr><tr><td>1,500ㄷㄷ이하</td><td>18원</td><td>1,000ㄷㄷ이하</td><td>100원</td></tr><tr><td>2,000ㄷㄷ이하</td><td>19원</td><td>1,500ㄷㄷ이하</td><td>140원</td></tr><tr><td>2,500ㄷㄷ이하</td><td>19원</td><td>2,000ㄷㄷ이하</td><td>200원</td></tr><tr><td>2,500ㄷㄷ초과</td><td>24원</td><td>2,000ㄷㄷ초과</td><td>220원</td></tr></table> 1의2 ~ 4. (생략) 5. 특수자동차 <table><tr><th>구분</th><th>영업용</th><th>비영업용</th></tr><tr><td>대형특수버스</td><td>36,000원</td><td>157,500원</td></tr><tr><td>소형특수버스</td><td>13,500원</td><td>58,500원</td></tr></table> 6. (생략) ② (생략)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ㄷㄷ당세액	배기량	ㄷㄷ당세액	1,000ㄷㄷ이하	18원	800ㄷㄷ이하	80원	1,500ㄷㄷ이하	18원	1,000ㄷㄷ이하	100원	2,000ㄷㄷ이하	19원	1,500ㄷㄷ이하	140원	2,500ㄷㄷ이하	19원	2,000ㄷㄷ이하	200원	2,500ㄷㄷ초과	24원	2,000ㄷㄷ초과	220원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버스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버스	13,500원	58,500원	제 3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1. 승용자동차 <table><tr><th colspan="2">영업용</th><th colspan="2">비영업용</th></tr><tr><th>배기량</th><th>시시당세액</th><th>배기량</th><th>시시당세액</th></tr><tr><td>----시시----</td><td>--</td><td>----시시----</td><td>--</td></tr><tr><td>1,600시시----</td><td>--</td><td>----시시----</td><td>--</td></tr><tr><td>----시시----</td><td>--</td><td>1,600시시----</td><td>--</td></tr><tr><td>----시시----</td><td>--</td><td>----시시----</td><td>--</td></tr><tr><td>----시시----</td><td>--</td><td>----시시----</td><td>--</td></tr></table> 1의2 ~ 4. (현행과 같음) 5. 특수자동차 <table><tr><th>구분</th><th>영업용</th><th>비영업용</th></tr><tr><td>-----자동차</td><td>-----</td><td>-----</td></tr><tr><td>-----자동차</td><td>-----</td><td>-----</td></tr></table>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세액	배기량	시시당세액	----시시----	--	----시시----	--	1,600시시----	--	----시시----	--	----시시----	--	1,600시시----	--	----시시----	--	----시시----	--	----시시----	--	----시시----	--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자동차	-----	-----	-----자동차	-----	-----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ㄷㄷ당세액	배기량	ㄷㄷ당세액																																																																								
1,000ㄷㄷ이하	18원	800ㄷㄷ이하	80원																																																																								
1,500ㄷㄷ이하	18원	1,000ㄷㄷ이하	100원																																																																								
2,000ㄷㄷ이하	19원	1,500ㄷㄷ이하	140원																																																																								
2,500ㄷㄷ이하	19원	2,000ㄷㄷ이하	200원																																																																								
2,500ㄷㄷ초과	24원	2,000ㄷㄷ초과	220원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버스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버스	13,500원	58,500원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세액	배기량	시시당세액																																																																								
----시시----	--	----시시----	--																																																																								
1,600시시----	--	----시시----	--																																																																								
----시시----	--	1,600시시----	--																																																																								
----시시----	--	----시시----	--																																																																								
----시시----	--	----시시----	--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자동차	-----	-----																																																																									
-----자동차	-----	-----																																																																									
제40조의3(세율)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로 한다. ②(생략)	제 40조의3(세율) ①주행세의 세율은 법제196조의17 제1항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②(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53조(납세의무자) ① ~ ④(생략) <u><신설></u>	제53조(납세의무자) ① ~ ④(현행과 같음) <u>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u>
제55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u>흡연용의 담배</u> 가. 제1종 쥘련 20개비당 510원. 다만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당) 이하인 쥘련은 20개비당 40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910원 다. 제3종 엽쥘련 50그램당 2,600원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910원 2. <u>씹는 담배</u> 50그램당 1,040원 3. <u>냄새맡는 담배</u> 50그램당 650원 ②담배로서 판매가격이 다음 각호의 정하는 금액 이하의 담배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로 한다. 1. 쥘련 : 20개비당 100원 2. 각련 : 50그램당 100원	제55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법 제22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제7절 종합토지세 <u><제71조 내지 제82조></u>	제7절 종합토지세 <삭제> <u><삭제></u>
제83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u>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u>	제83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

현행	개정안
<u>제234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자</u> <u>2. 건축물</u> <u>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자</u>	<u>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u>
제85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4.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85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 ----- ----- 6. ----- ----- -----
제86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u>재산세 과세대</u>	제86(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 ----- <u>토지·건축물 및 주택</u>----- ----- ---, ②----- ----- ----- ----- -----<u>재산세 과세대</u>

현행	개정안
장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7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 의무자가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장----- -----, -----. 제87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토지·건축물 및 주택----- -----토지·건축물 및 주택----- ----- ----- ----- -----, ②----- -----토지·건축물 및 주택----- ----- ----- -----.
제89조(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가액(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 또는 건축물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89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는 다음과 같다.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현행			개정안									
<table border="1"> <tr> <th>과세대상</th> <th>과세기준일</th> <th>납 기</th> </tr> <tr> <td>건축물</td> <td>매년 6월 1일</td> <td>매년 7월16일~7월 31일</td> </tr> <tr> <td>토 지</td> <td>매년 6월 1일</td> <td>매년 10월16일~10월 31일</td> </tr> </table>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 기	건축물	매년 6월 1일	매년 7월16일~7월 31일	토 지	매년 6월 1일	매년 10월16일~10월 31일	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 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정수 할 수 있다.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 기										
건축물	매년 6월 1일	매년 7월16일~7월 31일										
토 지	매년 6월 1일	매년 10월16일~10월 31일										
제91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제 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2로 한다.			제91조(세율) ----- -----1,000 분의 1.5 -----,									
제92조(납세고지 및 부과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정수의 예에 의한다.			제92조(납세고지 및 부과정수) ----- -----재산세----- ----- -----재산세----- -----,									
제93조(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제93조(신고의무) ①----- -----건축물 및 주택----- ----- ----- ----- 1. 건축물 및 주택 -----									

